

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3년 3월 21일

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

임용분야	임용등급	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예정부서	담당예정 직무
법률 전문요원	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	1명	2년 (주당35시간)	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	- 행정심판, 소청심사 청구사건 조사 및 쟁점 등 법리 검토 - 행정심판·소청심사위원회 개최 및 운영 - 행정심판, 소청심사 관련법령 등 개선 검토 - 조례 제·개정 등 법률적 현안 검토 등

※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

2. 법령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서울특별시 인사규칙」

3. 응시 자격 요건

-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- 지역·연령·성별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※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 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○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을 하나 이상 갖춘 자

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〈 법 제27조제2항제3호 경력경쟁임용에 따른 “경력” 응시요건 적용 〉

구분	응시자격요건(자격증)
법률전문요원 (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)	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◆ 해당분야 경력인정범위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대학, 대학원, 연구소, 학술, 연구단체, 민간기업 등에서 법률 분야 연구 실무종사 경력 또는 업무경력

※ ‘경력’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17조5항)

※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

4. 보수 수준

○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.

※ 아래 금액은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

[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 관련)]

(단위: 천원)

구 분	상한액	하한액
7급(상당)	64,776	46,006

※ 임기제공무원 7급 연봉 하한액(46,006천원) × 35/40시간 ≒ 40,255천원

※ 연봉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
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3. 4. 3.(월) ~ 4. 6.(목), (3일간 09:00~18:00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등기) ※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
 -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
- 접수장소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등기)
 - 소재지 : (04524)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 법무담당관 인사담당
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- ※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- 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- ※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연락(서류 분실 방지 목적)
- ※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/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배부

○ 시험일정

내 용	일 정	장 소
시험공고	23.3.21(화)~4.2(일)	
응시원서 접수	23.4.3.(월)~ 4.6.(목)	방문·우편접수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3.4.13.(목)	
면접시험	23.4.20.~21.(목/금)	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3.4.25.(회)	
최종합격자 발표	※ 인사위 일정에 따라 확정	

- 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(단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)

가. 1차시험(서류전형) : 개별통보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※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, 경력 및 업무실적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시행

나. 2차시험(면접시험) : 개별통보

-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
- 자질 및 발전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
다. 최종합격자 발표 : 시 홈페이지 공고
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임용 후 퇴직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사항)

○ 응시원서(첨부 1) 1부

-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(5급, 가급 10,000원/6~7급, 나·다급 7,000원/8~9급, 라·마급 5,000원)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(영수증, 매출전표) 또는 첨부(납부확인서)
- ※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. (판매장소 :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☎02-2133-7908)
- ※ 25개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(매출전표)를 취급하나,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(매출전표)를 구매하여야 함.
- ☞ 자치구 수입증지(매출전표)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
- ※ 온라인 구입은 ETAX홈(etax.seoul.go.kr)에서 절차(신고납부 → 서울시 채용수수료)에 따라 하면 됨
-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수입증지 구입 안내 ◆

1. 직접 방문 발급

- 직접방문 : 서울시 열린민원실(신청사1층)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(방문전 사전연락후 방문)
 - ▶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: 현금 또는 신용카드(체크카드 가능)
 - *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(방문시 필히 지참)
 - * 카드일 경우에는 결제 후 매출전표 발행(카드사용/가명점용), 부착
 - ▶ 구청 재무과 : 카드만 사용 가능

2.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(ETAX) 발급 :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 「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」 메뉴에서 구매 가능

- ▶ 성명, 주민번호, 금액(5천원, 7천원, 만원 중 선택) 입력 후 결제 구매(회원, 비회원 모두 가능)

◆ 메뉴위치 : [ETAX(etax.seoul.go.kr) > 신고납부 >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]

- ▶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, 복제방지 및 원본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

◆ 메뉴위치 : [ETAX(etax.seoul.go.kr) 홈 > 납부(영수증)확인 > 신고납부확인]

○ 이력서(첨부 2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○ 자기소개서(첨부 3) 1부

○ 직무수행계획서(첨부 4) 1부

○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(첨부 5) 1부

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첨부 6) 1부

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첨부 7) 또는 주민등록 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
○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(석사 이상) 또는 학위증명서 1부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※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
○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(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)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
※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[첨부9]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' 추가 제출
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

※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

- ▶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인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▶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▶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(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),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* ①, ②모두 제출

*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개 선택

※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(국세청 홈택스)

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:

- 민원증명 → 민원증명 : **사실증명신청**(동그라미 1번) → 사실증명(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)

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:

- 민원증명 → 민원증명신청 : **소득금액증명**(동그라미 2번) → 근로자소득용 발급(발급기한 설정) →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
-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

민원증명

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PC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**민원증명 서비스**입니다.

- 현 서비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2의 규정을 따릅니다.

민원증명 1

- 민원증명 원본확인 (수요처 조회)
- 문서위변조방지 및 처벌안내
-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
-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

민원증명 이용시간

증명발급 상세안내 >

- 사업자등록증명, 휴폐업사실증명 등 연중무휴 24시간
- 납세증명서, 소득금액증명 등 연중무휴 08:00 ~ 22:00
- 사실증명발급신청 연중무휴 09:00 ~ 24:00

민원증명 이용절차

01 홈택스 로그인
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/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.

02 민원증명신청
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증명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.

03 나의 민원증명 처리결과
민원증명 신청 후 [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]에서 본인의 신청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

민원증명신청

- 사업자등록증 재발급
- 사업자등록증명
- 휴업사실증명
- 폐업사실증명
- 납세증명서(국세 납세증명)
- 납부내역증명(납세 사실증명)
- 소득금액증명
- 근로자소득용 발급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)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
-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
- 표준재무제표증명
- 연금보험료등 소득·세액 공제확인서
-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원사업장증명
- 모범납세자증명
- 국세납세증명 조회(정부관리기관용)
- 근로(자녀)장려금 수급사실 증명
-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)
- 취업후학자금상환·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

나. 개별사항 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동일계통학과 증명서(첨부 8) 1부
-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첨부 9) 1부
-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(자격증, 어학검정서 등) (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)
-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

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니다.

-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,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법무담당관(김지현 ☎ 02-2133-6683)

※ 별지 서식은 “인재개발원 공동채용용 제출서식” 참조

직무기술서

임용예정기관(근무예정부서)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서울특별시 (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)	시간선택임기제다급	1명

주요업무	○ 행정심판, 소청심사 청구사건 조사 및 쟁점 등 법리 검토 ○ 행정심판·소청심사위원회 개최 및 운영 ○ 행정심판, 소청심사 관련법령 등 개선 검토 ○ 조례 제·개정 등 법률적 현안 검토 등
------	---

필요역량	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 ○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 능력·조정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법적 전문성
------	--

필요지식	○ 법률전문 지식
------	---

응 시 자 격 요 건	임용분야 : 법률전문요원	
	경력	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◆ 해당분야 경력인정범위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대학, 대학원, 연구소, 학술, 연구단체, 민간기업 등에서 법률 분야 연구 실무종사 경력 또는 업무경력
	우대요건	○ 법률분야 전공자